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99호)에 관한
의견서

제출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02-2039-8361
대표 이승휘
담당자 강성국
010-2415-7307

1. 안 제2조제1호에 관한 의견

의견 없음

2. 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관한 의견

현행법 제6조의 “정보공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헌데 안 제6조제2항과 제6조제3항에서 공공기관 일반이 구축·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과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동일한 명칭으로 언급함으로써 개념적 차원에서 혼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할 것을 제안함.

3. 안 제6조의2제1항

의견 없음

4. 안 제6조의2제2항

해당 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정보공개 처리담당자 행동강령이 포함된 내부규정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 내부규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며 해당 개정안 자체가 무의미해짐.

5. 안 제7조제1항

의견 없음

6. 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법에서는 청구된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의 정보에 대해 해당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에서는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의 단계와 종료예정일을 안내하고 해당 과정이 종료되면 통지하도록 함.

현행법에 비해 해당 개정안은 일부 개선된 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정보공개와 패러다임은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 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합한 정보들은 다른 비공개 조항들을 통해 충분히 비공개 할 수 있음.

따라서 단지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향후 그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해 질 수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9조제1항제5호의 폐지내지는 의사결정과정중인 정보들의 비공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함.

7. 안 제9조제1항제6호

의견 없음

8. 안 제9조제4항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와 그 세부기준에 대해 3년 주기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시킨 후 이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함.

이 비공개 대상정보의 적정성 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비공개 대상정보의 적정성 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에는 외부위원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만 적정성 검사를 수행할 경우 형식적인 검사에 머무를 수 있음. 또한 비공개 대상정보 적정성 검사에 대한 일정한 양식을 마련하고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의 평가와 피드백 방법이 포함되지 않음. 적정성 검사 보고서가 미흡하거나, 국가차원의 정보공개정책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지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해 시정토록 하는 등 시정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9.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정보공개청구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입력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간 시민사회 및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에 관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개

선 사항임.

이번 개정안에 이런 요구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임.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해당 대통령령의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주민번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개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단서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10. 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2호

해당 안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청구와 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금도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의 담당자들이 반복된 청구에 대해 임의로 종결처리를 하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통지 시에 담당자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관계없는 엉뚱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정보로써 가치가 없는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반복되는 청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이 개정안을 근거로 임의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됨.

또한 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법조문의 모호함을 악용해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됨.

해당 안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고려한 관점에서 작성된 개정안으로 판단됨.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은 정보공개제도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개정안이 시행 후 공무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청구인들의 권리침해와 제도 이용에 대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안은 폐기 되거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다시 작성되어야 함.

11. 안 제10조제4항제1호 및 2호

해당 안에서는 특정 청구가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정보공개를 하는 대신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도 많은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개정안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정보 소재의 대강만 안내하거나 소재를 부정확하게 안내해서 청구인을 번거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빈번한 데 있음. 따라서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방식을 굳이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만약 이를 법제화 하려면 개정안에 정보 소재의 “인터넷 주소(URL)” 또는 “QR 코드” 등과 같은 소재 정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정보에 혼선 없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를 공히 법률로써 공무원에게 부과해야 함.

12. 안 제12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제12조의 주요한 변화는 우선 제1항을 통해 공공기관이 규모적·지리적·고유업무 등의 특수성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기 힘든 경우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과 감독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회 구성위원 수를 외부전문가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및 감사·감독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외부전문가 수를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할 것을 명령함. 또한 심의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그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가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해당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동수였으며 위원들과 함께 의견개진의 권리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아왔음. 따라서 이의신청을 신청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불신은 구조적으로 발생해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불신을 줄이면서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더라도 개최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안전부 차원

에서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또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13. 안 제22조

기존까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던 정보공개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되었음. 이후 현재 지금의 위상과 역할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정보공개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고를 주장해 왔음.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격상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보공개정책에 대한 의지여부와 국무총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주요한 변화가 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위원회가 소속되는 공공기관 보다는 권한과 역할을 개정안에 정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안에서 정보공개위원회는 기존 역할에 더해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조사,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불합리한 제도운영을 조사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조사하는 것 등 새로운 위원회 기능은 그간 필요성이 요구되어온 부분임에 위원회의 역할을 통한 개선이 기대됨.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명시하고 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는 의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기능과 역할이 형식적 차원에 머물 수 있음. 따라서 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보고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관련된 투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위원회 활동을 통한 결과물 제출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14. 안 제23조

의견 없음

15. 안 제23조의2

의견 없음

16. 안 제29조

의견 없음

끝.